

2007. 9.

수 신 : 제천시의회 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
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발의자 : 김봉수 의원 (서명또는 날인)

외 4인

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의안발의서명서

76-0-6	3-	
성명증	66-0-1	
김영섭	2	
강천수	8	
이기현	011-2222	

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168
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07. 9. .
제 안 자 : 김봉수의원외 4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문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함.(안 제1조 등)

- 붙임 1.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끝.

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6조” 를 “제41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” 을 “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” 으로 하고, “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” 을 “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” 으로 하고, 동항제3호 중 “제137조” 를 “제146조”로 하고, 동항제4호 중 “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” 을 “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” 으로 하고, 동항제5호 중 “제79조의2의 규정” 을 “제77조의4의 규정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4항5항 중 “제36조” 를 “제41조”로 하고, “제20조” 를 “제27조”로 하며,

제10조제3항 중 “제36조” 를 “제41조”로 하고

제15조제1항2항 중 “제36조” 를 “제41조”로 하고

제16조 중 “제37조제2항” 을 “제4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천시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“감사”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 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.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다. 5.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, 공단 외의 출자 또는 출연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·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제41조</p> 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 법 제117조 및 제120조 3. 제146조 4.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 5. 제77조의4</p>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	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
① 법 <u>제36조제4항</u> 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,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	① 법 <u>제41조제4항</u> 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② (생략) ③ (생략)
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 <u>제36조 제5항</u> 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	④ <u>제41조 제5항</u> 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20조</u> 의 규정에 의하고 부과기준은 [별표 1]의 기준에 의한다.
⑥~⑦ (생략)	⑤ <u>제27조</u> ·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····· ········· ⑥~⑦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)</p> <p>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법 <u>제36조제4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에 해당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④ (생략)</p>	<p>제10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 <u>제41조제4항</u>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국가 및 시·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)</p> <p>① 법 <u>제36조 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 ② 법 <u>제36조 제3항</u>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시·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국가 및 시·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)</p> <p>① . . . <u>제41조 제3항</u> ② . . . <u>제41조 제3항</u> .</p>
<p>제16조(대리출석·답변의 통지)</p> <p>시장은 법 <u>제37조 제2항</u>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(대리출석·답변의 통지)</p> <p>. <u>제43조</u></p>